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7.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1. 개정이유

자체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상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항목을 정비하고, 경기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의 단위비용 산정공식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 항목 중 타 항목과의 통폐합 등 현장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불용액 감축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청의 예산집행 노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신설(안 별표3, 측정항목 8)
- 나. 보통교부금 자체노력수요 산정 시 재정절감 노력과 관련이 없는 ‘중등 직업교육학생 비중확대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로 이관 반영(안 별표1, 측정항목 2 / 별표2, 측정항목6)
- 다. 교육청의 재정변동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지원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8)
- 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교육과정운영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운영비를 학교·학생경비로 통합(안 별표2, 측정항목 2)
- 마. 환경변화에 따른 측정항목의 실효성과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 지방채 조기 상환(인센티브) 지원 항목을 자체노력수요에서 제외(안 별표3, 측정항목5)
- 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상 모호한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보통교부금 산정항목 상 용어 등도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정비(안 별표1, 2,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협의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21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제4조의2 관련)

교부수요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4. 법 제5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재해대책사업수요)	가. 교부기준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u>(이하 “각종 재해”라 한다)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교부대상 1) 각종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 2) 각종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등의 피해 예방사업 3) 각종재해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송, 임시수용 사업 4) 각종재해로 인한 교육 일정 연기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 교육 등의 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교부방법 시·도교육감이 재정지원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치우개선을	전전년도 <u>보수</u> ÷ 전전년도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원 증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증원 교원 1명당 소요액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치우개선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전문직원 1명당 임금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무직원 수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치우개선을	·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1명당 임금 · 사무직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무직원 1명당 임금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치우개선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단가
	명예퇴직 교원 수	1)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2. 학교 · 교 육 과 정 영 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Sigma(\text{학교급별} \cdot \text{규모별 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1에 따른다.
	나. 학급경비	학급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급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급당 6,869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5,109천원 · 중학교: 학급당 4,918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4,472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20,031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11,798천원 · 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다. 학생경비	학생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u>유치원: 학생당 328천원</u> · <u>초등학교: 학생당 595천원</u> · <u>중학교: 학생당 687천원</u> · <u>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687천원</u> · <u>일반고등학교</u>

			<u>교: 학생당 585천원</u> · <u>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1,144천원</u> · <u>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u> · <u>특수학교: 학생당 1,054천원</u> · <u>영재학교: 학생당 1,942천원</u>
<u>라. 삭제</u>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times$ 단위비용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1) 선진형 · 16학급 미만: 50,000천원 · 16~23학급: 80,000천원 · 24학급 이상: 100,000천원 <u>2) 삭제</u>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u>바. 삭제</u>			
사. 추가 운영비	학교 수	$\Sigma\{\text{유형별} \cdot \text{규모(연차)별 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2의2에 따른다.
아. 삭제 <2019. 2. 26.>			
자. 삭제 <2019. 2. 26.>			

	차. 삭제 <2019. 2. 26.>			
3. 교육 행정비	가. 기관 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학교 수 × 학교당 단위비용) + (학생 수 × 학생당 단위비용) + (기준 교직원 수 × 기준 교직원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	· 학교당 단위비용: 9,738천원 · 학생당 단위비용: 63천원 · 기준 교직원당 단위비용: 552천원
	나. 지방선거경비	지방선거경비	1)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 지원비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적,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학생 수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 면적 ÷ 해당 시·도의 학교 수) ÷ ∑(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 시·도별 학교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해당 시·도의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시·도별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해당 시·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해당 시·도의 전체 학생 수) ÷ ∑(시·도별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시·도별 전체 학생 수)] × 50% + (해당 시·도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전체 시·도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5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만 6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수급자 수 × 10% × 8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용 컴퓨터 지원액) + (만 6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수급자 수 × 8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수업료 2)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미충원 학생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전비용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1)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는 금액 3) 정산결과 부족한 금액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단위비용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다. 개발지구 내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설·이전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전환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당 매입비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바. 삭제 <2019. 2. 26.>			
사.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건축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아. 학교 기숙사 시설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자. 청사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연령별 유아 수 × 단위비용)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령별 지원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원 처우 수준, 교원의 학급 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당 지원액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유치원 수 × 단위비용) + (원아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라. 삭제 <2015.11.5>			
	7. 방과 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 학교 사업 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 단위비용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 단위비용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 1명당 연간 수강료
	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학급 수	학급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시설비
8. 재정 결합 보전	가. 지방교육채 상환	원리금 상환 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 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 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지원	적립 지원액	1) [(해당 사·도의 기준재정수요액 중 학교, 학급,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 한 수요액 ÷ 지(사·도별 학교, 학급,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 2) 기 적립·지원한 금액 중 교육부장 관이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 해 활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비고

-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급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 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방송 통신 고등학교	특수 학교	영재 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3학급	145,555	45,895	243,797	98,719	315,616	127,446		357,266	<u>394,517</u>	<u>1,294,517</u>		423,808	-
5학급	146,155	55,021	-	-	-	-		-	=	=		-	-
6학급	153,824	59,615	280,817	113,527	356,328	143,731		401,052	<u>513,774</u>	<u>1,413,774</u>		449,004	611,028
7학급	161,924	-	-	-	-	-		-	=	=		-	-
8학급	167,566	-	-	-	-	-		-	=	=		-	-
12학급	-	-334,212	-424,176	-	-	-		473,377	<u>803,111</u>	<u>1,703,111</u>		505,633	1,224,644
18학급	-	-389,104	-481,467	-	-	-	18,168	530,462	<u>1,381,069</u>	<u>2,381,069</u>	22,449	554,985	1,358,962
24학급	-	-444,514	-533,785	-	-	-		589,684	<u>1,506,869</u>	<u>2,506,869</u>		593,099	1,555,088
30학급	-	-499,724	-590,265	-	-	-		641,450	<u>1,626,535</u>	<u>2,726,535</u>		626,422	-
36학급	-	-548,114	-644,368	-	-	-		693,437	<u>1,757,229</u>	<u>2,857,229</u>		657,913	1,829,225
42학급	-	-592,373	-692,495	-	-	-		744,982	<u>1,861,311</u>	<u>2,961,311</u>		686,276	-
48학급	-	-640,279	-739,378	-	-	-		801,972	<u>1,986,158</u>	<u>3,086,158</u>		716,741	-
54학급	-	-680,826	-777,595	-	-	-		834,256	<u>2,071,387</u>	<u>3,171,387</u>		747,865	-

2.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에서 "선진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240,000천원	270,000천원	300,000천원	330,000천원

나. 통폐합 기숙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300,000천원	400,000천원	450,000천원	500,000천원

다. 국가직무교육 고등학교

학급수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110,000천원	140,000천원	170,000천원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따른 일반고 전환 후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단위비용	500,000천원	300,000천원	200,000천원

마. 학과개편 등 실시 고등학교

학교유형	규모	단위비용
학과 개편을 실시하 려는 고등학교	1학급~2학급 개편	개편학급 수 × 250,000천원
	3학급~6학급 개편	500,000천원 + {(개편학급수-2) × 150,000천원}
	7학급~9학급 개편	1,100,000천원 + {(개편학급수-6) × 100,000천원}
	10학급 이상 개편	1,500,000천원
직업교육 학급을 중설 하려는 고등학교	1학급~2학급 중설	중설학급 수 × 150,000천원
	3학급~6학급 중설	300,000천원 + {(중설학급수-2) × 100,000천원}
	7학급 이상 중설	800,000천원
특성화고로 전환하 려는 고등학교	12학급~17학급	학교당 2,000,000천원
	18학급~29학급	학교당 3,500,000천원
	30학급 이상	학교당 5,000,000천원

3.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교직원"이란 교원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4.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5.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산정공식에서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6. 2022년도분까지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7. 측정항목 제8호다목의 산정공식 2)를 산정할 경우, 해당 기금 적립을 목적으로 교부한 금액(누적)에서 부족한 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해 교부한 금액(누적)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산정하되, 산정하는 기준재정수요는 “음(-)”으로 산정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3]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7조제2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u>학교</u>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移轉) 지원	학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 초등학교: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중등학교: 11,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4,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00,000천원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 단위비용	학교(본교에 한정한다)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경우 가) 초등학교: 5,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중등학교: 8,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운영한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하여 통합·운영하는 경우: 3,000,000천원 나) 학교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1,000,000천원
	학생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의 초과 학생 수 × 단위비용	20,000천원

2. 학교시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Σ 학교별 <u>신증설비</u> 절감액 $\times$ 교 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3. 삭제<2020.2.25.>			
4. 외부로부터의 교 육투자 유치	외부 유 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	1)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div \Sigma$ 시·도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times$ 전체 시·도의 전전년도 비 법정이전수입 결산액 $\times 2.5\%$ 2)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외 부 유치재원 비율 - 해당 시· 도의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 원 비율) $\div$ 해당 시·도의 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div \Sigma[(\text{시·도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text{시·도별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div \text{시·도별 전전전년도외부 유치재원 비율}] \times \text{전체시·도의 전전년도 비법정이전수입 결산액} \times 2.5\% \div \text{전체시·도 수} \times \text{전전전년도 대비전전년도에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증가한 시·도 수}$	
5. 삭제			
6. 삭제			
7. 삭제 <2019. 2. 26.>			

8. 예산집행 노력	1) 이월액 및 불용액	1)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교 육비특별회계 이·불용률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이·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단위비용 2)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학교 및 교비회계 이·불용률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학교 및 교비회계 이·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단위비용	비고 3에 따른다.
	2) 조기 집행 비율	(해당 시·도의 전년도 상반기 집 행 비율 - 1) $\times$ 단위비용	1,000,000천원
	3) 순세 계잉여금 예산 편 성 비율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육비특 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비율 $\times$ 단위비용	1,000,000천원

비고

1. 측정항목 제1호에서 "통폐합"이란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 "통합·운영"이란 학
교 수가 줄어들지는 않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교 시
설·설비·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측정항목 제4호의 산정공식 2)를 산정할 때에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전전년
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0보다 작은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0으로 산정한다.
3. 측정항목 제8호의 측정단위 1)을 산정할 때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월 1일 이후 교부 통
지되어 이월된 국고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예산은 각각 예산현액 및 이월액에서 제외하며,
지역 및 회계구분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비특별회계 단위비용

(단위: 억원)

구분	0 이하	0 초과 ~ 1 이하	1 초과 ~ 2 이하	2초과
가 지역	50	-15	-30	-50
나 지역	75	-25	-50	-75
다 지역	100	-30	-60	-100

신·구조문대비표

□ 별표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제4조의2 관련)>

나. 학교 및 교비회계 단위비용

(단위: 억원)

구분	0 이하	0 초과 ~ 1 이하	1 초과 ~ 2 이하	2초과
가 지역	30	-8	-15	-30
나 지역	40	-12	-25	-40
다 지역	50	-15	-30	-50

다. 지역 구분은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하며, 회계별 구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교육비특별회계	5조원 미만	5조원 이상 ~ 10조원 미만	10조원 이상
학교 및 교비회계	1조원 미만	1조원 이상 ~ 3조원 미만	3조원 이상

4. 측정항목 제8호의 측정단위 2)에서 “상반기 집행 비율”이란 해당 시·도의 전년도 상반기 집행 대상 지출액 ÷ 해당 시·도의 전년도 상반기 집행 대상 목표액을 말하며, “상반기 집행 대상 및 목표액”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단, “상반기 집행 비율 -1”이 0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1로 산정하고, 0 미만인 시·도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측정항목 제8호의 측정단위 3)에서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비율”이란 해당 시·도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액 ÷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을 말한다. 단 예산편성 비율이 ‘0.9 이상 1.1 이하’ 일 경우 1로 산정하며, 그 외 비율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교부수요	현행	개정안
4. 법 제5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재해대책사업수요)	가. 교부기준 태풍·홍수·폭설·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해 (이하 “각종 재해”라 한다)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이하 생략	가. 교부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이하 “각종재해”라 한다)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이하 현행과 같음

□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차우개선을	$\frac{\text{전년도 결산액}}{\text{전년도 교원 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frac{\text{전년도 보수총액}}{\text{전년도 교원 수}}$
2.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다. 학생 경비	학생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cdot \text{유치원: 학생당 178천원}$ $\cdot \text{초등학교: 학생당 445천원}$ $\cdot \text{중학교: 학생당 537천원}$ $\cdot \text{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537천원}$ $\cdot \text{일반고등학교: 학생당 435천원}$ $\cdot \text{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994천원}$ $\cdot \text{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당 435천원}$ $\cdot \text{특수학교: 학생당 904천원}$ $\cdot \text{영재학교: 학생당 1,792천원}$
	라.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수	$\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육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삭제>	<삭제>	<삭제>
	마. 교과교실운영비	학교 수	$\text{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1) 선진형 · 16학급 미만: 50,000천원 · 16~23학급: 80,000천원 · 24학급 이상: 100,000천원 2) 과목중점형: 40,000천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삭제>
	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학교 수	$\text{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18학급 미만: 900,000천원 ·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1,000,000천원 · 27학급 이상: 1,100,000천원	<삭제>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8. 재정결합보전	<신설>	<신설>	<신설>	(현행과 같음)	다. 재정안정화기금적립지원	적립지원액	1) [(해당 사도의 기준재정수요액 중 학교, 학급,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수요액 ÷ Σ(사도별 학교, 학급,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기 적립·지원한 금액 중 교육부장관이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활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 별표 2 비교

현행

개정안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급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	방송통신 고등학교	특수 학교	영재 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3학급	145,555	45,895	243,797	98,719	315,616	127,446		357,266	394,517		423,808	-
5학급	146,155	55,021	-	-	-	-		-	-		-	-
6학급	153,824	59,615	280,817	113,527	356,328	143,731		401,052	513,774		449,004	611,028
7학급	161,924	-	-	-	-	-		-	-		-	-
8학급	167,566	-	-	-	-	-		-	-		-	-
12학급	-	-334,212	-	-424,176	-	-		473,377	803,111		505,633	1,224,644
18학급	-	-389,104	-	-481,467	-18,168			530,462	1,381,069	22,449	554,985	1,353,962
24학급	-	-444,514	-	-533,785	-			589,684	1,506,869		593,099	1,555,068
30학급	-	-499,724	-	-590,265	-			641,450	1,626,535		626,422	-
36학급	-	-548,114	-	-644,368	-			693,437	1,757,229		657,913	1,829,225
42학급	-	-592,373	-	-692,495	-			744,982	1,861,311		686,276	-
48학급	-	-640,279	-	-739,378	-			801,972	1,986,158		716,741	-
54학급	-	-680,826	-	-777,595	-			834,256	2,071,387		747,865	-

1. (현행과 같음)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특수 학교	영재 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3학급	145,555	45,895	243,797	98,719	315,616	127,446		357,266	394,517	1,294,517		423,808	-
5학급	146,155	55,021	-	-	-	-		-	-	-		-	-
6학급	153,824	59,615	280,817	113,527	356,328	143,731		401,052	513,774	1,413,774		449,004	611,028
7학급	161,924	-	-	-	-	-		-	-	-		-	-
8학급	167,566	-	-	-	-	-		-	-	-		-	-
12학급	-	-334,212	-	-424,176	-	-		473,377	803,111	1,703,111		505,633	1,224,644
18학급	-	-389,104	-	-481,467	-18,168			530,462	1,381,069	2,381,069	22,449	554,985	1,353,962
24학급	-	-444,514	-	-533,785	-			589,684	1,506,869	2,506,869		593,099	1,555,068
30학급	-	-499,724	-	-590,265	-			641,450	1,626,535	2,726,535		626,422	-
36학급	-	-548,114	-	-644,368	-			693,437	1,757,229	2,857,229		657,913	1,829,225
42학급	-	-592,373	-	-692,495	-			744,982	1,861,311	2,961,311		686,276	-
48학급	-	-640,279	-	-739,378	-			801,972	1,986,158	3,086,158		716,741	-
54학급	-	-680,826	-	-777,595	-			834,256	2,071,387	3,171,387		747,865	-

현행	개정안																				
2.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에서 "선진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과목중점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에서 "선진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생략) 나. 통폐합 기숙학교(생략) 다. 국가직무교육 고등학교(생략)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생략) 마. 학과개편 등 실시 고등학교																				
<table><tr><th>수용 정원</th><th>100명 미만</th><th>100명 이상 150명 미만</th><th>150명 이상 200명 미만</th><th>200명 이상</th></tr><tr><td>단위 비용</td><td>240,000원</td><td>270,000원</td><td>300,000원</td><td>330,000원</td></tr></table>	수용 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 비용	240,000원	270,000원	300,000원	330,000원	<table><tr><th>수용 정원</th><th>100명 미만</th><th>100명 이상 150명 미만</th><th>150명 이상 200명 미만</th><th>200명 이상</th></tr><tr><td>단위 비용</td><td>300,000원</td><td>400,000원</td><td>450,000원</td><td>500,000원</td></tr></table>	수용 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 비용	300,000원	400,000원	450,000원	500,000원
수용 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 비용	240,000원	270,000원	300,000원	330,000원																	
수용 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 비용	300,000원	400,000원	450,000원	500,000원																	
다. 국가직무교육 고등학교	<table><tr><th>학급수</th><th>18학급 미만</th><th>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th><th>27학급 이상</th></tr><tr><td>단위비용</td><td>110,000원</td><td>140,000원</td><td>170,000원</td></tr></table>	학급수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110,000원	140,000원	170,000원												
학급수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110,000원	140,000원	170,000원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table><tr><th>지정학소제 따른 일반교실 전환 후 연도</th><th>1차 연도</th><th>2차 연도</th><th>3차 연도</th></tr><tr><td>단위비용</td><td>500,000원</td><td>300,000원</td><td>200,000원</td></tr></table>	지정학소제 따른 일반교실 전환 후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단위비용	500,000원	300,000원	200,000원												
지정학소제 따른 일반교실 전환 후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단위비용	500,000원	300,000원	200,000원																		
<신설>																					
	7. 측정항목 제8호다목의 산정공식 2)를 산정할 경우, 해당 기준 적립을 목적으로 교부한 금액(누적)에서 부족한 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해 교부한 금액(누적)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산정하되, 산정하는 기준재정수요는 "음(-)"으로 산정한다.																				

별표 3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조제항 관련)>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u>학교·학급</u> 통폐합 및 신설 대체이전(移轉) 지원	학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 초등학교: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중등학교: 11,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4,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00,000천원	1. <u>학교</u> 통폐합 및 신설 대체이전(移轉)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설 대체이전 학교 수 × 단위비용	학교(본교에 한정한다)를 신설 대체이전하는 경우 가) 초등학교: 5,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중등학교: 8,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운영한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하여 통합·운영하는 경우: 3,000,000천원 나) 학교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1,000,000천원				
	학생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의 초과 학생 수 × 단위비용	20,000천원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2.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Σ학교별 <u>신설비</u> 절감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Σ학교별 <u>신설비</u>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5.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지방채 조기상환액	교육·학예 사무관련 지방채의 전년도 상환액 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채 조기 상환액 × 2.5%		<삭제>	<삭제>	<삭제>	
6. 중등 직업교육 비중 확대 지원	학교 수	1)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하려고 하는 고등학교 수 × 단위비용	<생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거점 특성화고로 지정하였거나 지정하려고 하는 고등학교 수 × 단위비용	<생략>				
		3)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였거나 증설하려고 하는 고등학교 수 × 단위비용	<생략>				
		4)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였거나 개편하려고 하는 고등학교 수 × 단위비용	<생략>				

현 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신설>	<신설>	<신설>		8. 예산집행 노력	1) 이월액 및 불용액	1)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단위비용 2)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학교 및 교비회계 이·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학교 및 교비회계 이·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단위비용	비고 3에 따른다.
	<신설>	<신설>	<신설>		2) 조기집행 비율	(해당 사도의 전년도 상반기 집행 비율 - 1) × 단위비용	1,000,000 천원
	<신설>	<신설>	<신설>		3) 순세계 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 단위비용	1,000,000 천원

□ 별표 3 비고

현행	개정안																																																				
<u><신설></u>	3. 측정항목 제8호의 측정단위 1)을 산정할 때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월 1일 이후 교부 통지되어 이월된 국고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예산은 각각 예산현액 및 이월액에서 제외하며, 지역 및 회계 구분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비특별회계 단위비용 (단위: 억원) <table><tr><th>구분</th><th>0 이하</th><th>0 초과 ~ 1 이하</th><th>1 초과 ~ 2 이하</th><th>2 초과</th></tr><tr><td>가 지역</td><td>50</td><td>-15</td><td>-30</td><td>-50</td></tr><tr><td>나 지역</td><td>75</td><td>-25</td><td>-50</td><td>-75</td></tr><tr><td>다 지역</td><td>100</td><td>-30</td><td>-60</td><td>-100</td></tr></table> 나. 학교 및 교비회계 단위비용 (단위: 억원) <table><tr><th>구분</th><th>0 이하</th><th>0 초과 ~ 1 이하</th><th>1 초과 ~ 2 이하</th><th>2 초과</th></tr><tr><td>가 지역</td><td>30</td><td>-8</td><td>-15</td><td>-30</td></tr><tr><td>나 지역</td><td>40</td><td>-12</td><td>-25</td><td>-40</td></tr><tr><td>다 지역</td><td>50</td><td>-15</td><td>-30</td><td>-50</td></tr></table> 다. 지역 구분은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하며, 회계별 구분은 아래와 같다. <table><tr><th>구분</th><th>가 지역</th><th>나 지역</th><th>다 지역</th></tr><tr><td>교육비특별회계</td><td>5조원 미만</td><td>5조원 이상 ~ 10조원 미만</td><td>10조원 이상</td></tr><tr><td>학교 및 교비회계</td><td>1조원 미만</td><td>1조원 이상 ~ 3조원 미만</td><td>3조원 이상</td></tr></table> 4. 측정항목 제8호의 측정단위 2)에서 “상반기 집행 비율”이란 해당 시·도의 전년도 상반기 집행 대상 지출액 ÷ 해당 시·도의 전년도 상반기 집행 대상 목표액을 말하며, “상반기 집행 대상 및 목표액”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단, “상반기 집행 비율 -1”이 0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1로 산정하고, 0 미만인 시·도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측정항목 제8호의 측정단위 3)에서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비율”이란 해당 시·도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액 ÷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을 말한다. 단 예산편성 비율이 ‘0.9 이상 1.1 이하’ 일 경우 1로 산정하며, 그 외 비율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분	0 이하	0 초과 ~ 1 이하	1 초과 ~ 2 이하	2 초과	가 지역	50	-15	-30	-50	나 지역	75	-25	-50	-75	다 지역	100	-30	-60	-100	구분	0 이하	0 초과 ~ 1 이하	1 초과 ~ 2 이하	2 초과	가 지역	30	-8	-15	-30	나 지역	40	-12	-25	-40	다 지역	50	-15	-30	-50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교육비특별회계	5조원 미만	5조원 이상 ~ 10조원 미만	10조원 이상	학교 및 교비회계	1조원 미만	1조원 이상 ~ 3조원 미만	3조원 이상
구분	0 이하	0 초과 ~ 1 이하	1 초과 ~ 2 이하	2 초과																																																	
가 지역	50	-15	-30	-50																																																	
나 지역	75	-25	-50	-75																																																	
다 지역	100	-30	-60	-100																																																	
구분	0 이하	0 초과 ~ 1 이하	1 초과 ~ 2 이하	2 초과																																																	
가 지역	30	-8	-15	-30																																																	
나 지역	40	-12	-25	-40																																																	
다 지역	50	-15	-30	-50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교육비특별회계	5조원 미만	5조원 이상 ~ 10조원 미만	10조원 이상																																																		
학교 및 교비회계	1조원 미만	1조원 이상 ~ 3조원 미만	3조원 이상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연 락 처	044-203-6528 044-203-6815